

「방산기술혁신 펀드」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22년 『방산기술혁신 펀드』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 개요

항 목	세부내용		
위탁운용 금액 및 선정 운용사수	○ 240억원		
	선정 운용사 수	공동 출자금액	최소결성금액
	1개사	240억원*	400억원
	* 공동출자자 : 방산기술혁신 펀드 200억원, 산업은행 40억원 ※ 한국성장금융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산업은행의 선정 및 승인 절차 별도 진행 필요		
출자대상 투자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,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,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○ 「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법상 집합투자기구, 투자조합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일 시점의 현행 법규에 따른 적법·유효한 투자기구일 것을 요하되, 펀드 결성 시 별도 협의 <p>※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, 본 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</p>		
운용사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국내에 설립된 법인 ○ 공동 운용(CO-GP)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		
운용사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<p>* 한국성장금융 : www.kgrowth.or.kr(출자사업공고) 한국산업은행 : www.kdb.co.kr</p>		
접수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년 11월 2일(수) (16:00 限) <p>* 주목적 투자대상, 출자조건 등 공고 조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앞 사전 협의 또는 문의</p>		
심사결과 발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년 11월 중 <p>* 지원 결과,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</p>		
펀드 결성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년 12월 31일 이내 <p>-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9개월 이내 연장 가능</p>		

2.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비율

- 국내 중소·중견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*은 제외)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신규 투자하여야 함

*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

□ 주목적 투자대상

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

○ 아래 ①, ②, 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① 방위산업 기업^{주1)} 또는 첨단과학기술 분야^{주2)}의 방위산업 진출 희망기업^{주3)}에 최소결성금액의 60% 이상 투자
- ② 방위산업 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10% 이상 투자
- ③ 우수기술기업^{주4)}에 투자집행금액의 80% 이상 투자

주1)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*

1.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기업
2.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로서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방위산업물자등'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
3. 방위산업체의 협력사(방위산업체의 확인 및 납품실적 필요)
4. 정부 및 유관기관의 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 선정기업 <별첨1 참고>
5. 해외 군수품·무기체계 관련 수출 실적 보유기업
6. 국내·외 방위산업 관련 R&D 또는 프로젝트(컨소시엄 포함) 참여 실적 보유기업

*1호 및 2호는 투자일 기준, 3호 내지 6호의 실적 인정 기간은 투자일 기준 3년 이내로 함

주2)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, 국방 5대 신산업분야, 국방 8대 미래 신기술 분야 등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술 <별첨2 참고>

주3) 투자 시 방위산업 진출 계획서<별첨3 참고>를 제출하여야하며, 투자 이후 방위산업 기업에 해당하게 될 경우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주목적 투자로 동시 인정 <별첨4 참고>

주4)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6등급(TI6) 이상이거나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

3. 주요 출자조건

항목	내용											
최소결성금액	○ 최소 400억원 이상											
운용사 출자 비율	○ 약정총액의 1%이상 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 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 * 운용사가 「상법」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※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											
존속기간	○ 펀드 결성일(성립일)로부터 10년 이내											
투자기간	○ 펀드 결성일(성립일)로부터 4년 이내											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											
운용 보수	○ 관리보수 :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*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≤500억원</th> <th>≤1,000억원</th> <th>≤1,500억원</th> <th>1,500억원<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투자기간 이내 (약정총액 기준)</td> <td rowspan="2">2.3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1.8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1.2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0.5% 이내</td> </tr> <tr> <td>투자기간 이후 (투자잔액 기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 시 상기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○ 성과보수 : 기준수익률(IRR 6%) 초과시 초과수익의 20% 이내 지급 ※ 보수 체계는 선정 시 상기 범위 내에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	구 분	≤500억원	≤1,000억원	≤1,500억원	1,500억원<	투자기간 이내 (약정총액 기준)	2.3% 이내	1.8% 이내	1.2% 이내	0.5% 이내	투자기간 이후 (투자잔액 기준)
구 분	≤500억원	≤1,000억원	≤1,500억원	1,500억원<								
투자기간 이내 (약정총액 기준)	2.3% 이내	1.8% 이내	1.2% 이내	0.5% 이내								
투자기간 이후 (투자잔액 기준)												
핵심 운용 인력	○ 핵심운용인력 : 총 2인 이상 ○ 자격요건 - 핵심운용인력 :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 - 전체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 ○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주목적 투자 완료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 ○ 핵심운용인력이 투자기간 중 본 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*를 초과할 수 없음 *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하고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○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기재											

출자자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및 법인이 원칙 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사의 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 운용에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○ 해외출자자(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) 및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○ 타 정책자금과의 매칭 시 한국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필요
수탁 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○ 펀드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회계 감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
펀드 전자 보고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펀드 전자보고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과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전자문서방식으로 보고 ○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 ○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출자조건(주목적투자분야(비율), 보수구조 등) 등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,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과정에서 공동출자자와 협의하여 결정

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 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,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

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 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 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 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※ 선정 취소 발생 시, 출자자간 협의에 의해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

5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□ 기 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**2022. 9. 30.(금)**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- 본 공고에 따른 한국성장금융 선정 위탁운용사는 산업은행의 최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함

6. 선정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제안심사 → 최종 선정

□ 선정 일정

일자	내용	비고
2022. 11. 2(수)	제안서 접수	~ 16:00
2022. 11월 중	심사결과 발표	개별 통지
2022. 12월 중	최종 선정	공동출자자 승인 절차 완료 후
2022. 12월 말	펀드 결성 완료	2022. 12. 31. 限

※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□ 지원방법

- 출자자가 정하는 제출서류*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퀵서비스, 우편 등으로 비대면 제출
- *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(관련 양식은 온라인 출자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)
- 제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12부)를 제출
 - 분량 : 20페이지 이내(제출 방법 및 양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)
-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협의(문의사항 집계 목적)

□ 출자 설명회(Online)

- 일시 : 2022년 10월 14일(금) 홈페이지 게시 예정
- * 단, 출자 설명회는 당사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

8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- 접수처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5층)
- 문의처 :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1본부 신사업금융1팀 (02-2090-9185)
E-mail : hjlee@kgrowth.or.kr

2022년 10월 12일

한 국 산 업 은 행
한 국 성 장 금 융 투 자 운 용

※ 공고일, 접수일 등 일정은 내·외부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별첨1**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**

-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의 대상기업의 경우 방위산업 기업으로 인정

방산육성지원 관련 사업 목록	대상기업
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	■ 과제 참여기업
방산혁신기업 100 지원사업	■ 선정기업
국방벤처 지원사업 (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)	■ 과제 참여기업
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	■ 과제 참여기업
제조로봇 도입 지원제도	■ 산업부 선정기업 중 방위사업법 상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

- ※ 향후 신규 도입되는 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 중 주목적 투자분야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인정 가능(성장금융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검토를 통해 인정 여부 판단)

별첨2**주목적투자 중 첨단과학기술 분야**

□ 아래 각 분야 및 기술(연계 기술 및 관련 업종 포함) 해당 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

구 분	해당 분야 및 기술
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^{주1)}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율·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기술 ■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기술 ■ 초고속·고위력 정밀타격 기술 ■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기술 ■ 유·무인 복합 전투수행 기술 ■ 첨단기술기반 개인전투체계 기술 ■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기술 ■ 미래형 첨단 신기술
국방 5대 신산업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반도체, 우주(항공 포함), 인공지능, 로봇, 드론
국방 8대 미래 신기술 분야^{주2)}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소재, 가상현실, 에너지, 인공지능, 센서, 신추진, 사이버드론, 무인로봇
주요 국방 혁신기술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우주, 극초음속, 첨단항공엔진, 무인/자율, 인공지능, 사이버, 양자, 합성바이오, 에너지, 반도체
기타 국방 혁신기술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용사에서 자율제안 하되, 성장금융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혁신기술 인정여부 판단

주1) 2019-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(국방부) 참고

주2) 미래신기술예측(국방기술진흥연구소) 참고

별첨3

방위산업 진출 계획서(안)

1. 기술(제품) 개요 (※해당되는 분야/항목에 모두 체크할 것)

기술(제품)명		
적용 가능 분야	국방전략기술 8대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기술 <input type="checkbox"/>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기술 <input type="checkbox"/>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기술 <input type="checkbox"/> 첨단기술기반 개인전투체계 기술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기술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기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기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래형 첨단 신기술
	국방 5대 신산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반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우주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공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로봇 <input type="checkbox"/> 드론
	국방 8대 미래 신기술 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소재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상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에너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공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센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추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이버드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인로봇
	주요 국방 혁신기술 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우주 <input type="checkbox"/> 극초음속 <input type="checkbox"/> 첨단항공엔진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인/자율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공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이버 <input type="checkbox"/> 양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성바이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에너지 <input type="checkbox"/> 반도체
	기타 국방 혁신기술 분야	(방위산업 연계) 활용 가능 분야 직접 기재

2. 보유 기술(제품)의 특성 및 차별화 포인트

○ 기술(제품)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존 기술(제품) 대비 내용 기술

3. 보유 기술(제품)의 방위산업분야 진출 가능성 (※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할 것)

적용 대상*	<input type="checkbox"/> 무기체계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력지원체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적용 수준	<input type="checkbox"/> 체계단위 <input type="checkbox"/> 부품단위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비단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적용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도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품 대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품 보완(병행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
○ 기술(제품)이 방위산업에 어떻게 활용·적용될 수 있는지 기재

- 1)실제 적용 가능한 대상, 2)적용 방법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

○ 이를 통한 기대효과(품질향상, 비용절감, 수입대체, 시장개척 또는 시장선도 등) 기술

*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[별표 4] 및 [별표 5] 참고

4. 방위산업분야 진출 계획 (※향후 이행여부 및 관련 증빙 확인 예정)

○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기재

- 인력충원, 시설투자, 연도별 목표 등을 포함한 단계별(기술개발, 규격인증·성능검사, 시제품 제작, 양산 등) 계획(세부 단계별 기간 명시)

- (필요시) 방위사업 R&D, 납품 참여 계획

○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 참여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기재

※ 기술(제품) 관련 방사청 주관 R&D 신규 참여실적, 무기체계 및 부품·장비 등 신규 납품실적이 발생하는 경우, 상기 계획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방산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인정

기업명 : _____ (인)

운용사 : _____ (인)

- 방위산업 진출 계획서 상 기재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실히 노력하였을 경우, 방위산업 기업*으로 진출하지 못한 경우도 주목적 투자로 인정 가능
 - * 본 펀드 공고문 상의 방위산업 기업 정의를 준용
 - 기업이 제시한 방위산업 연계·진출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법에 관한 노력 이행 여부
 - 상기 내용과 관련한 증빙 구비 여부
- 투자 이후 방위산업 진출 희망기업이 방위산업 기업으로 진출에 성공한 경우,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주목적 투자도 중복 인정